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9. 19(화) 10:00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6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818,763,965천원(일반 785,953,596천원 특별 32,810,3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계		818,763,965	734,968,659	710,356,657	21,882,868	2,729,134	83,795,306
일반회계		785,953,596	711,465,630	687,067,128	21,669,368	2,729,134	74,487,966
특별회계		32,810,369	23,503,029	23,289,529	213,500	0	9,307,340
	의료급여기금	682,598	590,000	590,000		-	92,59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591,400	591,400	591,400		-	
	주차장	31,536,371	22,321,629	22,108,129	213,500	-	9,214,742

4.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

(단위:천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교통건설국		78,755,485	54,016,120	24,739,365	45.80 %
교	통 행정과	3,218,090	1,884,175	1,333,915	70.80 %
주	차 관리과	53,707,457	33,144,645	20,562,812	62.04 %
건	설 행정과	302,169	301,468	701	0.23 %
도	로 과	11,091,321	9,546,943	1,544,378	16.18 %
치	수 과	10,436,448	9,138,889	1,297,559	14.20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교통행정과				
교통정책 사업	-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디지털2단지 사거리, 독산4동 사거리, 시흥4동 주민센터 주변)	222,400	102,400	120,000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 G밸리 공공안내표지판(27개소) 공공요금	473,390	464,894	8,49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강화 -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1,643,996	444,000	1,199,996
건설행정과				
불법전단지 정비구역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2,000	-	12,000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 도로 경계석 및 측구 정비, 기층 개량, 아스팔트 절삭 후 재포장(연건단가)	2,958,520	1,958,520	1,000,00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노후된 승강기 교체	120,000	-	120,000

세 부 사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강화된 내진설계기능에 미달된 도로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용역비 (금천과선교, 삼성산1,2터널)	85,000	-	85,000
	보안등 유지관리	-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594,307	564,307	30,000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무원 근로자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공백 발생	22,463	-	22,463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2023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 노후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물 정비	1,200,000	900,000	300,000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복구하여 안전 사고 예방 및 쾌적한 하천 이용환경 조성	1,589,238	1,137,238	452,000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침수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350,000	-	350,000
	신규 하수시설물 관리	- 메마른 도심속 친수공간 확보 - 신안산선(신독산역) 지하유출수 활용 안양천 한내교에 음악분수 및 낙하 분수 설치 - 무자개빛 음악분수와 조명 낙하분수 설치	100,000	-	100,000
	풍수해 대책	- 수방자재 구매로 침수피해 예방 - 풍수해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 보험 운용	186,472 시 3,000 구 183,472	102,472 시 3,000 구 99,472	84,000 구 84,000

○ 특별회계

(단위:천 원)

연 번	부 서 명	세 부 사업명	사 업 개 요	최종 예산액	기 정 액	2회 추경(안)
계				23,289,529	23,289,529	0
1	주 차 관 리 과	공영주차장 건설	- 공영주차장 발굴·매입·설계 공사 등	21,389,000	12,198,800	9,190,200
2		부설주차장 관리	- 부설주차장 개방 1개소 시설개선비 지원	10,108.745	108.745	10,000
3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	-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 (캐노피설치, 소방시설 교체, 바닥 교체 공사) 집행잔액 감소정	825,800	841,800	△ 16,000
4		기본경비	- 급량비	1,344,723	1,338,723	6,000
5		반환금 기타	- 시비보조금 반환금	25,202	660	24,542

6. 검토의견

○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정액(540억 1,612만원)에서 247억 3,936만원이 증액되어, 787억 5,5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9.62%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가. 교통행정과

기정액(18억 8,417만원)에서 금회 13억 3,391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1억 2,000만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9,999만원 증액

나. 건설행정과

기정액(3억 146만원)에서 금회 7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불법전단지 정비용역 1,2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출장비 등) 1,176만원 감액

다. 도로과

기정액(95억 4,694만원)에서 금회 15억 4,437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관내 도로보수 10억원 증액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8,500만원 증액

라. 치수과

기정액(91억 3,888만원)에서 금회 12억 9,755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 3억원 증액

안양천 하천 시설물 관리 4억 5,200만원 증액

마.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액(223억 2,200만원)에서 금회 92억 1,400만원 증액되어

315억 3,600만원이 편성됨

주요 편성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91억 9,02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1,600만원 감액

○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및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 부서에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